

프랑스 친권과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법률안

1. 들어가며

프랑스 정부는 “이혼 및 별거 수의 증가와 새로운 가족 형태의 생성”을 고려하여,¹⁾ 친족이 아닌 제3자가 아동의 삶에 용이하게 관여하기 위한 “친권과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법률안” (Avant-projet de loi sur l'autorité parentale et les droits des tiers)을 공표하였다.²⁾ 이러한 아동의 삶에 제3자의 관여를 허용하는 이유는, 아동은 부모의 이혼 및 별거에 의한 새로운 가족형태에서 친족 또는 비친족인 제3자³⁾의 감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이와 같은 제3자

는 아동과 일상을 함께 나누거나 밀접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아동의 삶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친권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 2002-305호 법률⁴⁾은 이미 아동의 삶에 제3자의 관여를 고려하였다. 위 법률은 친척 또는 비친척인 제3자에 귀를 기울이면서, 미성년 자녀의 직계존속과 개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현행 민법 제371조의 4조 제1항). 반면에, 2002년 법률은 법원의 결정에 의한 친권의 위임-분할(délégation-partage)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지만, 이에 관한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 그 이용의 한계를 드러내었다.⁵⁾

각주

- 1) 약 1,600,000명의 어린이들이 편부모 가정에서 2,700,000여 개의 재구성된 가족 내에서 생활하고 있다(친권 및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법률안(이유서), p. 1).
- 2) 이는 프랑스 민법 제9편 「친권」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법률 개정안’이라 칭한다.
- 3) 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계부모(beaux-parents), 의붓 형제·자매 등
- 4) 친권에 관한 2002년 3월 4일 법률(loi n° 2002-305 du 4 mars 2002 relative à l'autorité parentale)은 부모가 헤어지는 모든 경우(이혼, 별거, 사실상 별거, 내연 관계에서의 편부모 가정 등)에서, 혼인을 기초로 한 가족 및 혈연가족(법률상 혼인을 기초로 하지 않은 가족) 둘 모두를 공통적인 요소로 놓았다(GÉRARD Cornu, “Droit civil - La famille -”, Montchrestion, 2006, n° 80).

따라서 본 법률 개정안은 2002년 법률을 기초로 하여, 한편으로는 미성년 자녀와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는 제3자의 권리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부모에게 제3자와 친권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규정을 보충하고 완화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헤어진 부모 간에 유효한 공동부모성(coparentalit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법관에게 벌금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즉, 개정안은 크게 4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미성년 자녀와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고 밀접한 감정적 관계를 맺었던 제3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녀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둘째, 제3자의 관여에 관한 방식으로서, 친권의 행사와 관련된 통상행위와 중요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셋째, 결별한 부모 간의 ‘공동부모성’(coparentalité)을 강화시켰다. 넷째, 제3자가 아동을 위탁받거나 친권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II. 법률 개정안 내용

1. 미성년 자녀의 관계유지권

법률 개정안은 현행 민법 제371-4조 제1항에

아동의 “미성년 자녀 및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3자와의 관계유지권”을 추가하였다. 이 조항의 개정이유는 계부모(beaux-parents)가 됨과 동시에 생성되는 감정적 관계의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⁵⁾ 따라서 법률 개정 이후부터는 계부모 등 제3자와의 관계 유지에 관한 아동의 권리는 원칙으로서 적용되며, 오직 아동의 이익만이 이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른 모든 제3자들에게 적용되는 현행 프랑스 민법 제371조의4 제2항의 규정은 크게 개정되지 않는다. 다만, 제2항은 아동의 이익이 아동이 갖는 관계유지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관은 아동과 제3자와의 관계유지에 관한 방식을 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현행 친족 또는 비친족인 ‘제3자’에서 ‘다른 모든 자’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2. 친권 행사에 관한 ‘통상행위’와 ‘중요행위’의 개념의 명확화

현행 민법 제9편 「친권」 제1장 「자녀에 대한 친권」 제1절 「친권의 행사」에서는 제3자가 아동을 부양하게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부모 중 일방은 타방에게 필요적으로

각주

5) 그리고 가족과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보고서 등에서 오늘날의 법적 장치는 융통성이 없고 수많은 가족 상황에 알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본 개정 법률안은 부모의 모든 지위를 부모와 친권을 지배하는 원칙에 맞기는 동시에, 어린이의 삶에 제3자의 관여를 쉽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이유서, p.1).

6) 이유서, p.2.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3자에게 아동의 일상생활⁷⁾에 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때 타방의 동의는 추정된다(현행 민법 제372조의2). 다만, 현행 민법 제372조의2는 부모의 평등성 측면을 고려하여, ‘동의에 관한 추정’은 부 또는 모가 단독으로 행사한 친권의 통상행위 및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행 민법은 친권의 통상행위의 범주만을 규정하고 있고, 중요행위에 해당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률 개정안은 제372조의2에서, 통상행위와 중요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함(법률 개정안 제372-2조 제2항)과 동시에, 부 또는 모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 받은 제3자가 통상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법률 개정안 제372-2조 제1항). 법률 개정안에서 부모가 제3자에게 통상행위를 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생활에서 제3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동을 돌보고 있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동에게 더 나은 법적 안전장치를 제공한 것이다. 반면에, 중요행위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는 제3자의 관여를 제한한 것이고, 또한 아동이 제3자에게 위탁된 때에 제3자의 행위를 아동보호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민법 제

373조의4 제2항에 삽입되는 개정안은 아동을 위탁하고 있는 제3자가 행사하는 친권에 관한 규칙을 수정하였다. 이는 법률에 규정된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제3자는 친권의 중요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제3자가 아동의 이익과 그 이익이 제한되는 경우를 입증한 때에, 가사사건 담당 법관은 제3자에게 친권의 중요행위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3. 결별한 부모 간의 ‘공동부모성’ (coparentality)의 강화

제3자에 대한 특권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부모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민법 제372조의2의 6은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대심법원 법관에게 각 부모의 관계유지의 계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본조 제3항에서는 법관은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미성년 자녀를 외국으로 데려가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예로 들고 있다. 본 개정 법률안은 부모 간의 ‘공동부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관에게 위와 같은 조치뿐만 아니라 벌금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함으로써 가사사건 담당 법관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4. 제3자가 아동을 위탁받거나 친권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는 기회의 확대

(1) 현행 민법 제373조의3 제1항은 부모가 결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 중 1인이 사망하는 경우, 생존 부모에게 친권의 자동귀속(dévolution automatique)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과 제3항에서는 법관이 아동을 제3자에게 위탁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법관은 되도록 아동의 친족인 제3자에 위탁시키도록 하였는데, 법률 개정안은 친족이 선택되는 우위성을 삭제하였다. 즉, 법관은 제3자(부모 중 일방과 삶을 함께 하고 있거나 했던 자)가 아동의 일상생활에 함께 있거나 만족하는 방법으로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민법 제373조의3 제3항은 부모 간의 결별한 모든 상황(부모들이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에서, 부모 중 1인이 사망하는 경우, 법관이 그 자녀를 위탁하게 되는 제3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여기에서 제3자는 “아동의 이익이 존재하는 곳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 친족 또는 비친족인” 자이다. 이 규정의 명확성은 법관에게 아동과 제3자와의 관계에 관한 현실을 고려함과 동시에, 아동의 평안(bien-être)에 관하여 이들의 관계 유지에 관한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위 내용의 연장에서, 현행 민법 제377조에 제2항을 삽입한 법률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와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고 밀접한 감정적 관계를 맺었던 제3자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때에, 가사사건 담당 법관에 대하여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에게 위임하도록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부모 중 다른 일방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단절되어 있는 경우, 부 또는 모의 사망 등의 상황에서 아동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 제3자는 대심법원 검사장(Procureur de la République)의 개입 없이 법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법률관계의 신속성 및 아동의 법적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2) 본 법률 개정안의 또 다른 새로운 원칙은 승인된 합의에 의한 친권의 위임-분할에 관한 설정이다. 개정안 제377조의1은 위임에 관한 합의와 친권의 분할에 관한 메커니즘을 세움으로써, 친권의 행사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부모에게 융통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공하였다. 즉, 이 합의는 가사사건 담당 법관의 승인에 따르게 되는데, 법관은 합의가 어린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과 수임인의 합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법관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 중 일방의 청구를 받은 때에, 친권을 행사하지 않은 타방의 의견을 수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임은 새로운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판결 또는 승인된 합의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거나 양도될 수 있다(법률 개정안 제377조의2 제1항).

- (3) 그러나 위와 같은 제3자의 권한 확대에 대하여, 아동의 삶에 관여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인정되는 조치들(통상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및 승인된 합의에 의한 친권의 위임-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은 아동의 삶보다 성인의 삶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견해도 있다.⁸⁾

III. 친권과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71조의4

- ① 미성년 자녀는 직계존속과의 개인적인 관계 및 자녀와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고 밀접한 감정적 관계를 맺었던 제3자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오직 자녀의 이익만이 이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
- ② 자녀의 이익이 요구되는 경우, 가사사건

담당 법관은 자녀와 친족 또는 비친족인 다른 모든 자와의 관계유지에 관한 방식을 정한다.

[현행 민법] 제371조의4

- ① 미성년 자녀는 직계존속과 개인적 관계를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오직 자녀의 이익만이 이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
- ② 자녀의 이익이 요구되는 경우, 가사사건 담당 법관은 자녀와 친족 또는 비친족인 제3자와의 관계유지에 관한 방식을 정한다.

제372조의2

- ① 부 또는 모가 단독으로 친권에 관한 통상행위를 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통상행위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때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 ② 부모 쌍방의 동의는 친권에 관한 중요행위를 행사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자녀의 장애 특히, 건강 또는 교육에 관한 행위 또는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행위는 중요행위로 본다.

[현행 민법] 제372조의2

부 또는 모가 단독으로 자녀의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친권의 통상행위를 행사한 경우, 선

의 제3자에 대하여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373조의 2의6

- ①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대심법원의 법관은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의 보호에 유의하면서, 본장의 범위에서 그에 위임된 문제를 처리한다.
- ② 위 법관은 자녀와 각 부모의 관계유지의 계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91년 7월 9일 제91-650호 법률 제33조~제35조의 규정의 예외로, 가사사건 담당 법관만이 그 결정에 벌금강제를 추가할 권한을 갖는다. 가사사건 담당 법관은 벌금의 액수를 확정한다.
- ③ 특히 법관은 부모의 여권에 부모 쌍방의 허락 없이 자녀의 프랑스 영토 이탈금지 내용에 관하여 기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현행 민법] 제373조의2의 6

- ①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대심법원의 법관은 특히, 미성년 자녀의 이익의 보호에 유의하면서, 본장의 범위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문제를 처리한다.
- ② 위 법관은 자녀와 각 부모의 관계유지의 계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특히 법관은 부모의 여권에 부모 쌍방의 허락 없이 자녀의 프랑스 영토 이탈금지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기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73조의 3

- ① 부모 중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가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친권 내용의 일부를 박탈당했다 하더라도, 부모의 별거는 제373조의1에 규정되어 있는 친권의 귀속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② 예외적인 상황 및 자녀의 이익이 요구되는 경우, 특히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의 행사를 박탈당한 경우, 법관은 자녀를 친족 또는 비친족인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을 결정할 수 있다. 법관은 제373조의2의 8 및 373조의2의 11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며 결정한다.
- ③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부모의 별거 이후 친권행사의 방식을 정하는 가사사건 담당 법관은 부모 모두 생존 중에도, 부 또는 모 일인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자녀를 생존 부모 일방에게 위탁시키지 않고, 자녀의 이익에 따라 친족 또는 비친족인 제3자에게 위탁시키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법관은 자녀를 임시로 위탁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현행 민법] 제373조의3

- ① 부모 중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가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친권 내용의 일부를 박탈당했다 하더라도, 부모의 별거는 제373조의1에 규정되어 있는 친권의 귀속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② 예외적인 상황 및 자녀의 이익이 요구되는 경우, 특히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의 행사를 박탈당한 경우, 법관은 자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을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제3자는 되도록 자녀의 친족 중에서 선택된 자로 한다. 법관은 제373조의2의 8 및 373조의2의 11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며 결정한다.
- ③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부모의 별거 이후 친권행사의 방식을 정하는 가사사건 담당 법관은 부모 모두 생존 중에도,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 그의 자녀를 생존 부모 일방에게 위탁시키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373조의4

- ① 자녀가 제3자에게 위탁된 경우에도 부모는 계속적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수탁자는 자녀의 감호와 교육에 관한 모든 통상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친권 행사의 권한을 가진 자가 제3자의 중요행위에 대한 남용적 또는 부당한 거절을 하거나 친권 행사에 태만하거나 또는 친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자녀의 이익이 자녀를 위탁하고 있는 제3자가 친권의 중요행위를 행사할 수 있음을 정당화하는 때에, 그 제3자는 친권의 중요행위를 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받기 위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조치에 관한 필요한 입증은 제3자가 하여야 한다.

- ③ 가사사건 담당 법관은 자녀를 임시로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이 제3자가 후견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현행 민법] 제373조의4

- ① 자녀가 제3자에게 위탁된 경우에도 부모는 계속적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수탁자는 자녀의 감호와 교육에 관한 모든 통상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가사사건 담당 법관은 자녀를 임시로 제3자에 위탁하면서, 이 제3자가 후견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76조

친권의 포기 또는 양도는 효력이 없다. 단, 이하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가사사건 담당 법관이 승인한 합의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민법] 제376조

친권의 포기 또는 양도는 효력이 없다. 단, 이하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7조

- ① 특별한 상황이 요구되는 때에, 부모는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친권의 행사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 신뢰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 아동 수용을 인가받은 기관 또는 지방아동사회구조기관(service départe-

mental de l'aide social à enfance)에 위탁하기 위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미성년 자녀와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고 밀접한 감정적 관계를 맺었던 제3자는 그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친권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에게 위임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③ 부모가 자녀에 대해 명백히 무관심하거나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 기관 및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지방아동사회구조기관 역시 친권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들에게 위임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④ 본조에서 정하는 모든 경우, 법원은 부모 쌍방을 심리에 소환하여야 한다. 문제된 자녀가 교육적 원조조치의 대상인 때에는 친권행사의 위임은 아동 담당 법관의 의견 청취 후에 행해져야 한다.

[현행 민법] 제377조

- ① 특별한 상황이 요구되는 때에, 부모는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친권의 행사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 신뢰할 수 있는 가족구성원, 어린이 수용을 인가받은 기관 또는 지방아동사회구조기관(service départemental de l'aide social à enfance)에 위탁하기 위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부모가 자녀에 대해 명백히 무관심하거나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 기관 및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지방아동사회구조기관도 친권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들에게 위임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③ 본조에서 정하는 모든 경우에, 법원은 부모 쌍방을 심리에 소환하여야 한다. 문제된 자녀가 교육적 원조조치의 대상인 때에는 친권행사의 위탁은 아동 담당 법관의 의견 청취 후에 행해져야 한다.

제377조의1

- ①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부모는 수임자인 제3자와 함께 친권의 행사 전부 또는 일부의 위임 및 분할에 관한 합의를 승인받기 위하여 가사사건 담당 법관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능은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귀속한다. 법관은 그러한 합의가 자녀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얻거나 부모 쌍방 또는 일방과 수임인의 동의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였음을 확인한 때에, 그 합의에 대하여 승인한다.
- ②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중 일방은 이 친권의 위임 및 분할에 관한 결정을 받기 위하여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타방의 동의는 친권이 공동으로 행사되는 경우에 요구된다.
- ③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 중 타방의 의사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④ 제372조의2 제1항의 추정은 위임인(들)과 수임인에 의하여 행사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현행 민법] 제377조의1

- ①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임은 가사사건 담당 법관의 판결에 의한다.
- ② 그러나 친권위임에 관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 법관은 자녀의 교육상 필요한 때에,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취권 수입자인 제3자와 친권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이상, 친권의 분할은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의 동의를 요한다. 민법 제373조의2의 추정은 친권의 위임인(들) 및 수입인에 의하여 행사되는 행위에 적용된다.
- ③ 친권의 분할적 행사가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우, 법관은 부모 쌍방, 부모 중 일방, 수입인 또는 검찰관(ministère public)의 청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관은 제373조의2의 11의 규정에 따라 판결한다.

- ⑤ 친권의 분할적 행사가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우, 법관은 부모 쌍방, 부모 중 일방, 수입인 또는 검찰관(ministère public)의 청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관은 제373조의 2의 11의 규정에 따라 판결한다.

제377-2조

- ① 새로운 사정이 입증된 경우, 위임은 새로운 판결 또는 법관에 의하여 승인된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거나 다른 자에게 위임시킬 수 있다.

- ② 자녀를 부모에게 인도하는 것이 승인된 경우, 가사사건 담당 법관은 부모가 빈곤상태에 있지 않는 한, 부모로 하여금 그 동안의 부양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한다.

[현행 민법] 제377조의2

- ① 새로운 사정이 입증된 경우, 위임은 새로운 판결에 의하여 종료되거나 다른 자에게 위임시킬 수 있다.
- ② 자녀를 부모에게 인도하는 것이 승인된 경우, 가사사건 담당 법관은 부모가 빈곤상태에 있지 않는 한, 부모로 하여금 그 동안의 부양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한다.

백 명 선

(프랑스 주재 외국법제조사원)